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2300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기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승

담당변호사 이삼호

변론 종결2023. 5. 11.

판결 선고2023. 6. 2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9,876,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2.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7. 접수 제716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06. 9. 7.경 피고 B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7. 6.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인천 중구 D,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2) 피고 B의 다른 채권자 F조합은 2011. 5. 31.경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2. 15. 배당표가 확정되어 원고는 240,123,830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

피고 B은 2022. 2. 23.경 자신의 아들인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3. 7. 접수 제716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황 등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509,13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 1,045,863,040원(=원금 309,876,170원+지연손해금 735,986,870원1)), 주식회사 H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07,900,000원(①채권최고액 82,500,000원, ② 채권최고액 125,400,000원) 상당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2. 2. 15.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40,123,83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액은 2012. 2. 15.까지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1,153,114,754원(=원금 500,000,000원 + 이자 653,114,754원)²⁾에서 위 배당금 240,123,830원을 변제충당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억 5,000만 원³⁾을 기준으로 위 배당금을 변제충당한 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금 309,876,170원(=550,000,000원 - 240,123,830원)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금 309,876,1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금을 변제충당한 다음날인 2012. 2. 16.부터 2021. 7. 6.4)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2012. 2. 15.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원고가 2022. 2. 15. 보낸 문자가 당일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309,876,170원만을 청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지급기한을 2022. 3. 31.까지로 유예하여 주었는바,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는 완성하였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유예된 변제기의 다음날인 2022. 4. 1.부터가 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2. 2. 15.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22. 2. 15.경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되기 전인 2022. 4. 28.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2022. 2. 15.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한 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2012. 2. 15.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4. 28.경 이전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5, 6,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2. 15.경으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22. 2. 1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되기 전인 2022. 4. 28.경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2022. 2. 15.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22. 2. 15.경 이 사건 아파트인 피고 B의 주소로 '잉여차용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내용'을 제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2. 2. 15. 19:56:38경 피고 B의 휴대전화로 위 내용증명과 동일한 내용의 문자내역(이하 '이 사건 문자'라고 한다)을 발송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촉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2. 2. 16. 피고 B에게 배달완료되고, 위 문자내역은 2022. 2. 15. 19:56:38경 피고 B에게 수신되었다.

2. 수신인 B은 2006년 09월 07.일 본인에게 차용금 금500,000,000원, 이자 연24%, 변제일 2007년 06월 30.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 교부하고, 수신인 부동산(토지)에 채권최고액 금5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3. 본인은 상기2항의 차용금증서를 받고 같은 날 수신인의 계좌로 금50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4. 그 후 수신인의 부동산은 2011년 06월 01.일 인천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결정 후 경매가 진행되어 발신인은 채권최고액 금550,000,000원을 배당요구 하였으나, 2012년 02월 15.일 금240,123,830원만을 배당받았으므로 수신인에게 금309,876,170원의 잉여차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5. 따라서 수신인은 상기 잉여차용금을 2022년 03월 31.일까지 변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본인은 수신인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문자의 수신시점인 2022. 2. 15. 19:56:38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문자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7. 6. 30.경으로 원고가 2012. 2. 16. 이후 대여금 잔액 309,876,170원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 대상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인데, 이 사건 문자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 '차용금 5억 원, 이자 연 24%, 변제일 2007. 6. 3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2. 2. 15.경 240,123,830원을 배당받아 309,876,170원의 잉여차용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위 잉여차용금을 2022. 3.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3.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1,045,863,040원(=원금 309,876,170원+지연손해금 735,986,870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 피고 C의 재산인데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공분양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피고 C이 2015. 8.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기간 2015. 10. 6.부터 2017. 11. 30.까지, 임대보증금 74,882,000원, 월 임대료 250,18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이 2015. 10.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54,262,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원리금을 2022. 8. 15.부터 2022. 12. 6.까지 사이에 4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2021.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이 266,005,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21. 10. 1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채권최고액 합계 207,900,000원(1순위 채권최고액 82,500,000원+2순위 채권최고액 125,400,000원)인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이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설정된 사실,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된 소유권자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C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유나

별지

1) 309,876,170원에 대한 2012. 2. 16.부터 2021. 7. 6.까지 연 24%, 2021. 7. 7.부터 2022. 2.

22.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5억 원에 대한 2006. 9. 7.부터 2012. 2. 15.까지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3,114,754원(=5억 원 $\times$ 0.24 $\times$ {5+162/366})

3) 대여 원금 5억 원과 2012. 2. 1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5,000만 원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의사로 보임.

4)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2021. 7. 6.이전까지는 연 24%, 2021. 7. 7.부터 현재까지는 연 20%임.